

제 0000 호

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(법인명):

2. 대 표 자:

3. 소재지:

4. 최초 지정 연월일:

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

[illegible]